

더큰아산
행복한시민



2019. 6. 20.(목) 10:30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2019.
6월 2차 이장회의 회의자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1 민선7기 1주년 기념, 아산교육 비전선포식 안내

담당 : 문태희 ☎ 537-3134

- 주 제 : 아산의 미래, 교육으로 ‘通’하다!
‘현재가 행복한, 내일이 희망찬’ 교육도시 아산
- 일 시 : 2019. 6. 26.(수) 14:00
- 장 소 : 아산시청 시민홀
- 참석인원 : 200명(학부모, 학생, 교육전문가, 주요 내빈 등)
- 주요내용 : 아산 교육 비전 대내외 선포(홍보)

2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안내

담당 : 문태희 ☎ 537-3134

- 음주운전 관련 벌칙(제148조의2, 6. 25.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벌 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u>0.08%</u>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u>0.03%</u> 이상 <u>0.08%</u>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의내용

- 소주 1잔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 취기가 오르면 0.03퍼센트에 도달할 수 있음.
- 음주 다음날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도 운전 금지 수준이 될 수 있음.

3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납부 안내

담당 : 문태희 ☎ 537-3134

- 납세의무자 : 2019.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선납 차량은 제외
- 납부기한 : 2019. 6. 16.(일) ~ 7. 1.(월)
-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

※ 고지서를 미 수령, 분실, 훼손하신 경우 세정과 방문 없이 은행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세액을 확인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 (고지서 필요 없음)
-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041-540-2281)

4

다문화 생활개선 캠페인 및 대청소 참여 협조

담당 : 황민수 ☎ 537-3132

- 일시 : 2019. 6. 28.(금) 06:30 ~ 09:00
※ 일정은 업무형편, 기상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읍내리 일대 (경희학성아파트 입구 등) [**집결장소** : **온양농협읍내지점**]
- 참여대상 : 120명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행복키움추진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대학가발전협의회 등)
- 진행흐름 : 어깨띠 착용 후 홍보물(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배부 및 대청소 실시
- 협조사항 : 이장님들 꼭 참석 당부

5

2020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담당 : 문태희 ☎ 537-3134

- 공모기간 : 2019. 5. 22.(수) ~ 7. 5.(금)
- 응모자격 : 아산시민 누구나
- 공모범위 : 시민 대다수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수혜의 범위가 특정지역(읍·면·동)에 국한되는 사업은 제외
- 접 수
 - 방 문 :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아산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
 - 우 편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복 지 팀

1

2019. 노인 결핵 검진 안내

담당 : 심태섭 ☎ 537-3135

- 검진일정 : 2019. 8. 19.(월) ~ 8. 29.(목)
- 검진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지참)
- 검진장소 : 경로당 등
- 검진방법 : 결핵협회 이동 차량을 이용한 순회 검진
- 검진항목 : 흉부 X선 촬영 및 원격 판독, 객담 검사 등

2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외국식료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홍보

담당 : 심태섭 ☎ 537-3135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두거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

○ 무신고 제품 판매 시 처벌 규정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벌칙94조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 벌칙45조 적용)

→ 고발(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6항 위반 :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5호 위반 :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무신고) 제품 예시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 불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폐기 등)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시 처벌 규정 (「식품위생법」 제33조 위반)

→ 과태료(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 부과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

- 위반차수 적용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증가

3

기초연금 기초급여액 안내

담당 : 김진옥 ☎ 537-3702

○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기초연금

- 65세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선정기준액(2019년) : 단독 137만 원, 부부 2,192,200 원

가구유형	수급자 구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비 고
단독가구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	0~3,750	300,000	
		3,750~50,000	253,750~300,00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일반수급자	50,000~1,116,250	253,750	
		1,116,250~1,370,000	25,370~253,75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0~33,750	300,000	
		33,750~80,000	253,750~300,00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일반수급자	80,000~1,938,250	253,750	
		1,938,250~2,192,000	25,370~253,75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부부 2인 수급가구 (부부합산)	저소득자 (소득하위 20%)	0~6,000	480,000	
		6,000~80,000	406,000~480,00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일반수급자	80,000~1,786,000	406,000	
		1,786,000~2,192,000	50,740~406,000	소득 역전방지 감액 대상

1 자전거·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

담당 : 송현중 ☎ 537-3704

○ 충남지역 교통사망사고 사례

사고 발생일시	사 고 내 용
2019. 6. 04시 (차대오토바이)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도로 - A(여/57세)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오토바이 동승자B(여/62세)씨 사망
2019. 6. 19시 (차대자전거)	충남 천안시 서북구 - A(여/43세)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자전거운전자(남/58세) 사망
2019. 6. 20시 (자전거단독)	세종시 세종로 제천변 자전거 도로 - 운전부주의로 도로변 경계석을 충격 후 좌전도되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친 단독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남/66세) 사망

○ 자전거·오토바이 주행 시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필수 (동승자 포함) · 야간·새벽 시간대(19:00~06:00) 운전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운전 시 안전장비 필수(전조등·후미등·야광반사지) · 횡단보도에서는 도보로 이동
오토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착용 필수 (동승자 포함) · 기본법규 준수(좁은 길 감속운전, 신호위반·난폭운전·음주운전 금지) · 야간·새벽 시간대(19:00~06:00) 운전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운전 시 자동차 운전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야광조끼·띠 착용 및 전조등·미등 켜기

○ 교통사고예방 마을방송 안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과 함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주행 시 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난폭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야간·새벽시간대인 오후7시부터 오전6시에는 주변이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운전 시 야광조끼 착용과 전조등을 켜 자동차 운전자가 식별가능 하도록 하고 되도록 운전을 자제 부탁드립니다.